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 안	
번 호	43

제출년월일 : 1998. 10.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제2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제2의건국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조례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조례 제3조)
-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조례 제8조)

□ 조 례 안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1998. 10. 1제정)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충청북도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부의장, 도의회상임위원장,
2. 시장·군수·출장소장
3.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에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10인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국장이,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내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